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61
----------	------

발의연월일 : 2016. 9. 2.

발 의 자 : 이효상 · 신성봉 · 천병태
김순점 · 강혜순 · 김영길
이복희 · 하경숙 김경환
권태호, 서경환 (11명)

1. 제정이유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 제고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까지)
- 다. 보호자 관람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활용홍보 및 민간운영시설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까지)

3. 근거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제3호 및 제4조제2항에서 “구”라 한다)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과 그를 보조하기 위하여 함께 공공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제4조제3항 및 제7조에서 “공연장 등”이라 한다) 중 구가 관리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최적관람석”이란 공공시설 내에서 객석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는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예산이 투자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공연장 등에 있었어도 장애인이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호자관람석)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장애인의 보호자관람석을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을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한다.

제6조(활용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최적관람석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홍보시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261)

1. 의안명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내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6. 9. 2.(금)
- 제출자 : 이효상 외 10명
- 위원회회부 : 위원회회부 : 2016. 9. 13.(화)
- 위원회심사 : 2016. 9. 21.(수)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효상 의원)

가.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 제고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골자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까지)
- 보호자 관람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활용홍보 및 민간운영시설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까지)

4.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복지법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익희)

- 중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제고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